

외국인투자법 개정 추진현황

이란의 국정조정위원회(Expediency Council)는 국회가 회부한 외국인투자법 조정안의 일부를 승인한 것으로 2002. 4. 27자 발표하였는데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.

□ 추진경위

- 1955년 제정된 외국인투자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개혁파를 대표하는 국회와 보수파를 대변하는 헌법수호위원회(Guardian Council)는 지난 1년간 3차에 걸친 국회 의결과 지속적인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거부로 대립상태를 지속하였으며 법안 개정이 좌절되어 온 상태임.
- 이에 따라 국회는 2002. 3. 10자로 3개 사항(내용 미확인)을 국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을 요청한 바 있음.
- 국정조정위원회는 회부된 3개 사항 중 1개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 입장을 승인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논의중이라고 발표함.

□ 승인내용

- 국정조정위원회가 승인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자의 자격에 관한 것으로 해외거주 이란인에게도 해외투자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임.
- 따라서 앞으로 해외거주 이란인은 외국인투자법의 보호아래 합법적인 이란내 투자가 가능해짐.

□ 효과

-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이란이 시행 중에 있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

(2000. 3-2005. 3)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평균 7.1%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150억 달러의 투자유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.

- 해외거주 이란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2,000~4,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약 500억 달러 정도가 2년 이내에 이란 국내로 투자 가능한 자산으로 추정되고 있음.
- 따라서 이번 승인의 결과가 반영된 개정 외국인 투자법의 시행시 해외거주 이란인의 對이란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, 동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신환경의 개선 등 인프라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됨.

【이란주재원】